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42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수와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실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생활임금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실군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임금 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임실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군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의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8조(생활임금 장려)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